

● 제29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214)

2021. 2.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외 16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2월 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3·1운동은 당시 무단통치기에 침체된 독립운동을 부활시키고,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1운동의 정치적 실현인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
- 또한 과거 3·1운동 기념 관련 사료에 따르면 3·1운동의 기념행사는 경사일이자 축제로서의 성격을 지녔는바, 오늘날의 3·1운동 및 3·1절 관련 기념행사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축제로서의 성격이 축소되고, 추모 또는 만세운동 재현에 집중하고 있음.
- 이에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

요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다.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3조)

라. 3·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3·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3·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3·1운동 기념사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3·1운동 기념사업에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제정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
- 제정안은 13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및 계승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본이념(안 제2조)으로 3.1운동의 자유·평등·평화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며, 정의규정(안 제3조)에서는 3·1운동 기념사업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시장의 책무(안 제4조)로 3·1운동 기념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등을 명시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3.1운동 기념사업 기본원칙(안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7조), 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및 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안 제9조), 지원(안 제10조)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표창(안 제12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8조(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제2조(기본이념)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정의)	제10조(지원)
제4조(책무)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표창)
제6조(3·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	제13조(시행규칙)
제7조(3·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부 칙

가. 총칙 규정(안 제1조~안 제5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기본이념(안 제2조), 용어정의(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3·1운동 기념사업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기본이념(안 제2조), 용어정의(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3·1운동 기념사업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총칙규정은 3·1운동 기념사업의 목적 및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3·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새로운 고찰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하겠음.

나.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6조~안 제7조)

- 본 조례안은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세부 사항으로는 3·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의 충실한 반영 및 범시민적 참여 유도과 경축 분위기 조성,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및 선양행사 추진 등을 통

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3·1운동 기념사업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3·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조례안은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기본원칙 하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추진계획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종합적인 장단기 전략과 시책들을 담은 일종의 종합계획으로 보통 3~5년의 주기로 수립하므로, 동 조례의 5년 주기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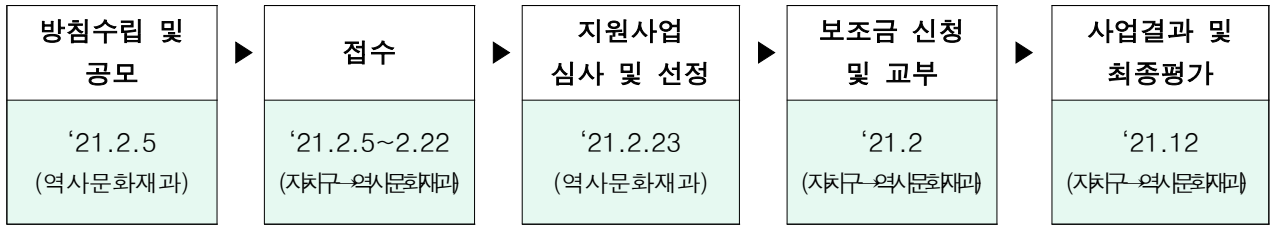
다. 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안 제8조)

- 조례안은 3·1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3·1운동 관련 학술, 출판 및 문화·예술 사업, ▲3·1운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1운동 관련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 사업,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관리 사업, ▲3·1절 경축행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3·1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 2019년 서울시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본 사업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일회성·행사성으로 진행된 사항임.
- 서울시는 3.1운동 기념을 목적으로 총 2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먼저 복지정책실 소관으로 광복회서울특별시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1절 민족정기선양대회’는 3.1절을 맞이하여 회원 위문 및 격려로 3·1운동 정신을 고취하고, 광복회원들이 단합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배양하여 국가발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사업내용으로는 3·1절 노래제창 및 만세삼창, 3·1운동 관련 동영상 시청 등이며, 행사 위주의 일회성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문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기념사업’은 3·1운동 관련 행사 및 독립운동역사 교육, 유적지 탐방 등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사업 추진절차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서류 접수 후 내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심사를 실시하여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형태임. 선정된 공모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며,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결과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표> 2021년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절차



- 복지정책실 및 문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기념사업은 일회성이거나 사업 범위가 다소 협소한 경향이 있음. 그러므로 본 조례 제정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3·1운동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계획과 수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3·1운동 관련 학술, 출판 및 문화·예술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관련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관리사업의 경우 역사적 고증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과급력이 큰 사항으로 복지정책실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추후 관련 부서 간 협의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임.

라.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9조)

- 본 조례안은 3·1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을 위한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는 3·1운동 기념사업의 자문을 위해 운영되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 설치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여겨짐.
- 또한 시장의 조직편성권에 해당하는 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는 바, 위원회 설치·구성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마.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안 제11조)

- 조례안(안 제10조)은 3·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3·1운동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또한 3·1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타 지자체,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11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의 제정 사항인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바. 그 외 규정(안 제12조~안 제13조)

- 제정안은 3·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표창(안 제12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안 제13조)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사. 집행부 의견

-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및 호국정신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한국독립운동을 대표하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 서울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기념사업을 다방면으로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제정안의 3·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사항은 복지정책실에서 총괄 관리·감독하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역사적 고증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임.

문 의 처

허아름 입법조사관 (02-2180-8145)